[회의록]제209차 이사회 회의록 - 강원의료복지사협 90차

<1> 회의일시 : 2026년 4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
<2> 회의장소 : 조합원 활동공간 "마중" (중앙로 80, 3층)
<3> 회의참석 : 이광희 이사장, 박준영 부이사장, 신승훈, 염은경, 김선기, 천혜란, 정연우, 서연남(이상 이사, 총 8명)
불참 : 최효심, 이창호, 김태성, 이윤승

4. 성원보고
- 이광희 이사장(이하 의장)이 성원 12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9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

5. 전차회의록
- 의장이 26년 2월 10일(화) 제208차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

6. 보고안건
-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

7. 논의안건

□ 제1호 의안 : 2026년 2월 ~ 3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1. 제안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6차 개정)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7차 개정)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7차 개정)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7차 개정)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3. 제안 내용

- 26년 2월 신규 조합원 : 36세대, 30명(가구원)

	성명	가구원				
1	박종배					
2	오수미					
3	박영례	윤경이				
4	신좌근	임영옥	신형우	신형진	신승만	홍순녀
5	변소영					
6	이은주					
7	신연선					
8	변문자					
9	김동숙					
10	최은옥					
11	곽이서	박선재	박윤후			
12	이승호					
13	박영은	김태형	김에릭			
14	김혜숙					
15	홍태경	최우영				
16	이찬희	이재복	이다원	이종원	정호윤	임슬인
17	송영호					
18	김정아	김재순	김도현			

	성명	가구원				
19	문임숙	정민모				
20	조금녀	김학열				
21	박달막					
22	박정옥					
23	김이슬					
24	김민서					
25	이구현	하선명	이영호			
26	박애경					
27	박찬희					
28	정선영					
29	이미숙					
30	오정숙					
31	신부연	서우식				
32	김지현	심예나				
33	최수영	오부임				
34	권순자					
35	박복선	김종화	김다야	김성도	김평온	김태온
36	최영숙					

- 26년 3월 신규 조합원 : 21세대, 16명(가구원)

	성명	가구원			
1	한동순	고창곤			
2	엄기정				
3	홍병만				
4	안선자				
5	엄은희				
6	김수임				
7	한춘란				
8	신미현				
9	손종희	이대성	이영준	이혜진	
10	곽용림	강정원			
11	지금옥				
12	이선영	이대식			
13	남순남				
14	김익진				
15	변춘하	노갑선			
16	한수화				
17	김재훈	오경숙	김도희	김나현	
18	정은희				
19	이종석	이수정	이승수		
20	이금숙				
21	조영희	한병구	한겨레	한국인	한나라

- 총 57세대(가구원 46명) *총조합원수 1,995명(26. 4월 17일 기준)

- 이상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 규정 제정의 건

1. 제안 배경

- 조합 사업 및 활동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관리규정, 취약계층 의료복지지원 규정, 자원봉사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적용 운영하고자 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3. 제안 내용 **※별첨자료) 차량관리규정, 취약계층 의료복지지원 규정, 자원봉사단 운영규정**

- **(차량관리규정(안))** 조합의 차량 활용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직원의 안전과 차량 운행에 관련한 명확한 기준(사용 범위, 운행 절차, 사고 대응, 비용 처리 등)을 제정하여 차량 운영의 안전성·투명성·책임성 확보하고자 함.

-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규정(안))**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체계화하고, 조합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범위, 재원 활용 원칙 등 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자원봉사단 운영 규정(안))** 조합의 다양한 사업(돌봄, 건강 예방 및 관리, 지역활동 등) 수행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의 체계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고자 함.

-> 결정 사항 :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이사회 의견을 다시 수렴 후 제정하는 것으로 하다.

- 추가 의견 -

차량관리규정(안)에서 제16조(사고 책임) "※중과실 기준 5. 인도돌진"은 삭제하고, 내부 기준의 사고 처리에 있어 과실기준, 직원부담금 기준 등 을 % 로 구분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면 한다.

취약계층 의료복지 지원 규정에서 제2조(정의) 취약계층 범위를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범위의 대상으로 수정했으면 한다. 제4조(지원사업) 의 사업 수행에 있어 신청서(서식) 상의 신청서비스 내용과 맞추어 밝음의원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항목만으로 수정하였으면 한다. 취약계층 의료복지지원 신청서 관리에 있어 종이가 아닌 구글폼으로 만들어 디지털화하였으면 한다.

자원봉사단 운영 규정에 있어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이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에 대해 정말 고민하고 만들어서 자원봉사단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자원봉사를 위한 회의도 분기, 반기 등 연례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 제3호 의안 : 강원사회적경제연대 공제기금 차입 승인의 건

1. 제안 배경
- 25년 발생한 환수금 및 과징금 납부 이슈, 외부 환경(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재원 확보 불확실성 등 안정적인 조합 경영 운영을 위한 유동성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임.
- 강원사회적경제연대에서 운영하는 공제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상호부조와 협력을 기반으로 조성된 연대금융으로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과 생활권 중심의 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조합은 2022년 7월부터 10만원의 공제기금 납부를 시작하여 현재 450만원(26년 3월말 기준)을 납부함.
- 450만원을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면 납입액의 5배를 대출받을 수 있음. (최대 2,000만원)
- 이에 조합은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기금을 활용한 차입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안 내용

- 차입기관 :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
- 차입금액 : 금 이천만원(20,000,000원)

- 금리 : 2 ~ 3.75%
- 상환기간 : 최대 24개월(거치기간 최대 12개월 포함)
- 차입용도 : 운영자금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 제4호 의안 : 대의원·임원 학교(강좌) 추진위원회 승인의 건

1. 제안 배경
- 조합은 설립 이후 24년을 운영해오며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반을 토대로 내실 있게 성장시키고자 노력해왔음.
- 하지만 여러 가지 내·외부 상황의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수행에 있어 "조합원 참여의 형식화", "대의원·임원의 역할 수행 역량 편차", "차기 리더 육성 체계 부재", "조합 성장동력 약화" 등 지금과 같은 조합 운영은 한계가 있음을 인지 함.
- 이에 대의원·임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차기 리더 육성과 조합 성장동력 강화, 조합원의 참여 확대 등 조합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의원·임원 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하고자 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안 내용
- 대의원·임원 학교 추진위원회 승인
- (예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안) : 5~8명
 · 이사회 추천 : 2~3인 / 대의원 : 2인 / 실무자 : 1~2인 / 필요시 : 외부 전문가(자문) 포함
- 추진위원회 역할
 · 교육 운영계획 수립

· 강사 섭외 및 교육 운영 관리
· 참여 대상자 발굴 및 조직 내 확산 전략 수립
· 교육과 조합 사업·전략 연계
· 성과 평가 및 개선안 도출

-> 결정 사항 :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대의원, 임원학교 추진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 관심 있는 조합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생각한다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시) 미래협동학교, 의료협동조합교실 등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했으면 한다.
교육 준비에 있어 자천, 추천 형태로 임원, 대의원이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했으면 한다.

□ 제5호 의안 : 가정전문간호사(원주·횡성(2명), 강릉(1명), 총무회계팀장(1명) 채용 진행의 건

1. 제안 배경
- 현재 가정전문간호사가 5명(원주 2명, 횡성 1명, 강릉 2명) 근무 중이나 요양원의 가정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가정전문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 임.
- 이에 원주·횡성 2명, 강릉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추가 보충 자료)
제1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도경숙 대의원이 가정간호센터의 매출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정간호센터 예산 20% 삭감을 제안한 사항이 있음.

(가정간호센터 운영방향 관련) 가정간호센터 간담회 진행
담당 지역에서 간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지역별 인력 채용을 즉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 (원주·횡성 : 1명 ~ 2명, 강릉 : 1명)
향후에도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내부 논의(원장단 + 사무국)를 거쳐 추가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장기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유도하고 구인 되는 지역에 따라 (요양원, 재가 등) 분배 진행하는 것으로 함.

-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총무회계과장이 5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하여 이에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할 총무회계팀장을 채용하고자 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안 내용
- 가정전문간호사 (원주·횡성 2명, 강릉 1명) 채용
- 총무회계팀장 1명 채용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서 명

의장 이광희	**이사 박준영**
이사 염은경	**이사 신승훈**
이사 김선기	**이사 천혜란**
이사 서연남	**이사 정연우**